

사 천 시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 관 의 장

제563호 2018. 07. 16.(월)

조 례

- 사천시 조례 제1484호 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2
- 사천시 조례 제1485호 사천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4
- 사천시 조례 제1486호 사천시 주민등록번호 수집 서식 일괄개정조례—————5
- 사천시 조례 제1487호 사천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학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7
- 사천시 조례 제1488호 사천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8
- 사천시 조례 제1489호 사천시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10
- 사천시 조례 제1490호 사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14
- 사천시 조례 제1491호 사천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18
- 사천시 조례 제1492호 사천시 환경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20
- 사천시 조례 제1493호 사천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22
- 사천시 조례 제1494호 사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24
- 사천시 조례 제1495호 사천시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25
- 사천시 조례 제1496호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31
- 사천시 조례 제1497호 사천시 바다낚시공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34
- 사천시 조례 제1498호 사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35

조 례

- 사천시 조례 제1499호 사천시 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조례—————37
- 사천시 조례 제1500호 사천시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38
- 사천시 조례 제1501호 사천시 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42
- 사천시 조례 제1502호 사천시 건설공사부실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45
- 사천시 조례 제1503호 사천시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56
- 사천시 조례 제1504호 사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59
- 사천시 조례 제1505호 사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61
- 사천시 조례 제1506호 사천첨단항공우주과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63
- 사천시 조례 제1507호 사천시보건소 등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68

규 칙

- 사천시 규칙 제670호 사천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학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70
- 사천시 규칙 제671호 사천시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74
- 사천시 규칙 제672호 사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78

훈 령

- 사천시 훈령 제359호 사천시 부서별 분장사무규정 일부개정규정—————105

회 람										
--------	--	--	--	--	--	--	--	--	--	--

발행 : 사천시 / 편집 : 공보감사담당관 / ☎ 831-2215 / FAX 831-6012

사 천 시 공 보

제563호(2)

조 례

사천시 조례 제1484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7월 16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26조의 제목 “(법령 위반 또는 사정변경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 을 “(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 으로 한다.

제2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조 같은 항 제1호 부터 제7호까지 각각 삭제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563호(3)

①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를 중지하였을 때

5.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6. 지방보조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563호(4)

사천시 조례 제1485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7월 16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

사천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를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563호(5)

사천시 조례 제1486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주민등록번호 수집 서식 일괄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7월 16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주민등록번호 수집 서식 일괄개정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에 따라 법령에 근거 없이 불필요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내용이 포함된 조례의 서식을 일괄 개정하여 시민들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민등록번호란 개정) 조례 중 주민등록번호 수집 서식의 개정 대상은 별표와 같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563호(6)

【별표】

조례 중 서식 개정 대상

연 번	제 명	관련 서식	현 행	개정
1	사천시 지하수조례	별지 제3호서식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2	사천시 지하수조례	별지 제4호서식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3	사천시 지하수조례	별지 제5호서식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4	사천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5	사천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별지 제2호서식	주민등록 번호	생년월일
6	사천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별지 제2호서식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7	사천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별지 제10호서식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8	사천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별지 제11호서식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9	사천시의회 포상조례	별지 제5호서식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사 천 시 공 보

제563호(7)

사천시 조례 제1487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학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7월 16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학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학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1 중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다.

제10조제1항 제2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업무 담당주사” 를 “국민기초생활보장업무 담당팀장” 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563호(8)

사천시 조례 제1488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7월 16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주민생활지원업무담당과장”을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 중 “의료급여업무담당주사”를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은 「지방회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사 천 시 공 보

제563호(9)

제9조를 제11조로 하고, 제9조 및 제10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대지급금의 상환 등) ① 기금담당관은 대지급금의 총액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대지급금의 지출원인 행위를 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달의 마지막 날을 최초의 납입기일로 하여 3개월마다 분할 상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지급금은 무이자로 한다.

1. 10만원 미만은 3회
2.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은 8회
3. 30만원 이상은 12회

② 대지급금의 상환의무자가 대지급금을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6개월 이내의 납입기간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독촉에도 대지급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10조(결손처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료급여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서 사천시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지급금 및 부당이득금을 결손처분 할 수 있다.

1. 체납처분이 끝나고 체납액에 충당될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2. 해당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3. 체납자의 재산이 없거나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견적가격이 체납처분비보다 적은 것이 확인된 경우
4. 그 밖에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사천시 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563호(10)

사천시 조례 제1489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생활안정자금 용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7월 16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생활안정자금 용자 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생활안정자금 용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사천시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생활안정자금 용자 조례”를 “사천시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로 한다.

제1조 “생활안정을 위한 단기용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생활안정자금(이하 "자금"이라 한다)을 마련하기 위한 특별회계”로 하고

사 천 시 공 보

제563호(11)

“관리·운영”을 “관리·운용”으로 한다.

제2조 본문 중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을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중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으로 한다.

제3조의 제목 “(기금의 조성)”을 “(자금의 조성)”으로 한다.

제3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단기융자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자금”으로 한다.

제3조 제1호 중 “사천시”를 “시”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기금운용”을 “자금운용”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 (융자대상) ① 자금의 융자대상은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중 자활·자립의욕이 강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자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2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자”를 “사람”으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항 제5호 중 “기타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특히”를 “그 밖에 시장이”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하고, “자”를 “사람”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제10조제1항 및 제13조 중 “기금”을 각각 “자금”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융자액은 1세대”를 “융자금액은 한 세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하며 “자는”을 “사람은”으로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563호(12)

제5조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자금에 대한”을 “제1항에 따른 용자금의”로 하고, “연3퍼센트”를 “연 2퍼센트”로 하며 “거치기간중의”를 “거치기간 중의”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재정정보중에 관련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7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중 “자가”를 각각 “사람이”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규정한”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며, “제5조제2항의 규정에”를 “제5조제2항에도”로 하고 “상환”을 “반환”으로 한다.

제7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자가”를 각각 “사람이”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 (심사위원회) 기금의 관리운용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심사는 「사천시 시정조정위원회조례」 제3조제15호에 따라 사천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 (특별회계의 설치 및 존속기한) ① 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사천시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둔다.

②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제1항 중 “세입은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세입은 제3조에 따

사 천 시 공 보

제563호(13)

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5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의2(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특별회계의 자금출납명령관은 업무담당 부서장, 자금출납공무원은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0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의3(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은「지방회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3조 중 “시장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를 “시장은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제9조제2항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율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융자한 융자금의 이율은 종전의 규정에 따르고, 이 조례 시행일 이후 발생하는 이자에 대한 이율은 이 조례를 적용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563호(14)

사천시 조례 제1490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7월 16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자활기업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금리 차이에 대한 보전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활근로 참여자의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 대여
3. 법 제15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자산형성지원

사 천 시 공 보

제563호(15)

4. 법 제1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자활기업 사업자금 대여
5. 법 제18조의2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자 채용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에 따른 자활지원 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비용
7. 「지역신용보증재단법」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 보증하는 경우에 드는 비용
 - 가. 자활기업이 금융회사 등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 받는 채무
 - 나. 수급자가 대여 받는 생업자금 채무
8. 수급자 및 차상위자(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의 증가 등으로 수급자에서 차상위자로 된 사람에 한정한다)의 자활지원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또는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부담하는 본인의 보험료 지원
9. 자활사업 연구·개발·평가 등을 위한 비용
10.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하여 기계설비 구입 및 시설보강 사업비 등 지원
11. 지역자활센터 참여자에 대한 사기진작 및 취업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장 설치·운영 및 자격증 취득비 등 교육비 지원
12.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전문성 제고를 위한 사업 지원
13.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의 창업 및 운영을 위한 컨설팅 지원
14. 자활기업 전문가 인건비 한시적 지원
15. 그 밖에 시장이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 또는 자활지원을 위한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사 천 시 공 보

제563호(16)

제4조 중 “기금은 제11조의”를 “기금은”으로 한다.

제4조의1 중 “공포한 날부터 5년으로”를 “2022년 12월 31일까지로”로 한다.

제5조제4호 중 “제10조”를 “제9조”로 한다.

제5조에 제6호와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법 제18조의2에 따른 수급자 채용기업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자

제8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시장은 기금의 사업자금의 대출 및 회수에 관한 사무를 금융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의 제목 “(자활 기업이 대여 받은 사업자금의 이차보전)”을 “(자활 기업이 대여 받은 사업자금의 이차보전)”으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각 호에 해당하는 때”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제10조 중 “제26조의4”를 “제26조의4제7호”로 한다.

제12조제2항제4호 중 “부의하는”을 “회의에 부치는”으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기금관리 공무원)”을 “(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담당주사로”를 “담당팀장으로”로 한다.

제13조의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1(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은 「지방회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4조의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1(지원금 사후관리) ① 이 조례에 따라 기금을 지원 받은 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기금사용현황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연도 중 사업을 종료하였을 때에는 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기금사용현황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결과 기금을 지원목적 및 조건에 위반하여 사용한

사 천 시 공 보

제563호(17)

자에 대하여 보조지원의 경우에는 지원금을 반납하게 할 수 있으며, 대출지원의 경우에는 상환기한에 이르기 전에 대출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③ 시장의 자활기금 반납 또는 환수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향후 지원금 신청 및 지급과정에서 불이익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563호(18)

사천시 조례 제1491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7월 16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사천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제1항 중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법 제25조제1항”을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사 천 시 공 보

제563호(19)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 하여야 한다.

제5조를 삭제한다.

제6조제2항 중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구성된 ‘사천시 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운영위원회’”를 “ 「사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로 한다.

제10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종합계획 수립 시 성별을 주요 분석단위로 포함시켜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563호(20)

사천시 조례 제1492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환경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7월 16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환경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환경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7호 중 “푸른사천21”을 “사천의제21”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공청회 등을 통하여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를 “사천시 환경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된다. 위촉직 위원은”을 “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고,”로 한다.

제3장의 제목 “푸른사천21실천협의회”를 “사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 천 시 공 보

제563호(21)

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푸른사천21”을 “사천의제21”로 하고 “푸른사천21실천협의회”를 “사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한다.

제23조제3항 중 “지방의제21 관련 국장 및 과장”을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을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고”로 한다.

제24조제1호, 제2호, 제3호 및 제26조제1항제2호 중 “푸른사천21”을 각각 “사천의제21”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563호(22)

사천시 조례 제1493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7월 16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은 「지방회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

사 천 시 공 보

제563호(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2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563호(24)

사천시 조례 제1494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7월 16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제1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563호(25)

사천시 조례 제1495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지명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7월 16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지명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

사천시 지명위원회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에 따라 사천시 지명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사천시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 부위원장은 업무담당국장이 되며 간사는 업무담당팀장이 된다.

사 천 시 공 보

제563호(26)

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업무담당 부서장, 문화·관광업무담당 부서장이 되며,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장이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연구·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분야별로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3조(위원의 임기)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제2조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시작한다.

제4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때
3.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때

제5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563호(27)

-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 소집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안건 등을 각 위원에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
-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제1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을 대체할 수 있다.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지명의 제정, 변경 또는 조정
2. 관할구역 안의 지명에 관한 조사, 자료의 수집 및 분석
3. 그 밖에 지명에 관한 중요사항

사 천 시 공 보

제563호(28)

제8조(심의·의결 대상 지명종류) 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에 따라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수 있는 인공지명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서 정한 인공지명의 종류에 해당될 경우 시의 도로·공원 등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은 지체 없이 지명위원회 업무담당 부서의 장에게 미리 지명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서 정한 인공지명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지명을 심의·의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간사가 위원장과 협의하여 대상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새로이 지명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도 지역·기관 간 분쟁이 없다고 판단되거나 경미한 지명 제정·변경에 대하여는 간사가 위원장과 협의 후 위원회의 심의·의결 없이 변경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⑤ 고시된 지명 중에서 한글 또는 한자가 단순오기로 인해 실제와 달라 변경이 필요한 경우 등 경미한 지명변경에 대하여는 간사가 위원장과 협의 후 위원회의 심의·의결 없이 변경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제9조(지명의 조사) ① 제7조에 따른 지명의 조사는 관할구역 안의 법정 및 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지명, 인공지명, 지표물 지명 등 일체의 지명을 조사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563호(29)

- ② 제1항에 따라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 과정을 포함하여 복합 호칭되고 있는 지명이나 명칭 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 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기본도의 표기오류 지명을 조사한다.
- ③ 행정구역 경계 간 기채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이에 관계되는 인접 지방 행정기관 소속직원 또는 위원이 공동으로 조사할 수 있다.
- ④ 지명을 제정하고 변경할 경우에는 외래어가 남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회에서 지명을 조정 또는 의결할 때에는 조서 작성 또는 이에 관여한 관계공무원이나 관련 전문가로부터 의견청취 등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출석하는 시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천시 위원회실비 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회의록) ①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심의·의결사항 및 진행사항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 요지

사 천 시 공 보

제563호(31)

5. 그 밖에 중요사항

② 간사는 회의마다 전(前) 회기 안전과 제8조제4항 및 제5항에 대하여 경과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사천시 지명위원회조례」에 따라 설치된 사천시 지명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사천시 지명위원회로 본다.

[별표 1] 심의·의결 대상 인공지명종류(제8조제1항 관련)

구 분	종 류	비 고
도로	지하차도, 고가도로, 육교, 교차로, 나들목(IC), 교량, 터널	
수부	인공호수, 저수지, 나루터, 보	
주거	마을, 신도시, 공원	

사 천 시 공 보

제563호(31)

사천시 조례 제1496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7월 16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사용료의 조정) 영 제16조에 따른 사용료의 조정 비율은 100분의 70으로 한다.

제26조 중 “제9조제1항제4호·제23조제2호·제32조제3항·제38조제1항제25호·제39조제2항제5호 및 제39조제3항”을 “제23조제2호, 제32조제3항, 제39조제2항제5호 및 제39조제3항”으로 한다.

제28조제5항제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2호의 근

사 천 시 공 보

제563호(32)

린생활권 도시농업을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

제28조제8항을 삭제한다.

제29조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3항” 을 “제1항” 으로 한다.

제32조 중 “사용료·대부료” 를 “대부료” 로 한다.

제38조제3호 중 “2012년 12월 31일” 을 “2012년 12월 31일(「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적용기간을 말함)” 로 하고, 같은 조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무허가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주거환경정비 등을 위해 국가로부터 취득한 후 사업변경 등에 따른 토지에 대하여 점유 중인 건축물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563호(33)

[별표 1]

공용면적 계산방법

가. 건물의 공용면적

$$\text{해당 건물의 총 공용면적} \times \frac{\text{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text{해당 건물의 총 전용면적}}$$

나. 토지의 공용면적

○ 부지의 공용면적

$$\text{해당 부지면적} \times \frac{\text{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는 건물면적(전용·공용면적 합계)}}{\text{해당 부지내 건물의 연면적}}$$

사 천 시 공 보

제563호(34)

사천시 조례 제1497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바다낚시공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7월 16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바다낚시공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바다낚시공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6호 중 “반려동물을 동반하는 행위”를 “반려동물을 동반하는 행위(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인 보조견과 동반하는 행위는 제외한다.)”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563호(35)

사천시 조례 제1498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7월 16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존치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

사 천 시 공 보

제563호(36)

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 중 “특별회계업무담당주사로”를 “특별회계업무담당 팀장으로”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회계공무원의 책임)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은「지방회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 중 “범위 안에서”를 “범위에서”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항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563호(37)

사천시 조례 제1499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7월 16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도시개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3항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563호(38)

사천시 조례 제1500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7월 16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지하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 제목 “(지역지하수관리위원회)” 를 “(지하수관리위원회)” 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천시지역지하수관리위원회” 를 “사천시지하수관리위원회” 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부의하는 사항” 을 “회의에 부치는 사항” 으로 한다.

제5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563호(39)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3(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그 밖에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제4항 중 “지하수업무담당주사가” 를 “업무담당 팀장이” 로 한다.

제8조의 제목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 를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 및 존속기한)” 으로 하고 제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제4호 중 “지하수 물이용 부담금” 을 “지하수이용부담금” 으로 한다.

제11조제2호 중 “지하수업무 담당과(소)장” 을 “업무담당 부서장” 으로

사 천 시 공 보

제563호(40)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지하수업무 담당 국장”을 “업무담당 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분임경리관”을 “분임재무관”으로 “지하수업무 담당과(소)장”을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제11조제5호 및 같은 조 제6호 중 “지하수업무 담당주사”를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4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과·오납금의 환급 등) ① 시장은 지하수이용부담금의 징수 금액 중 이중납부나 납부 후 그 부과의 취소·경정결정 등으로 과·오납이 발생한 경우에는 납부의무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하수이용부담금을 환급할 때에는 과·오납된 날의 다음날부터 환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급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별지 제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2항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563호(42)

사천시 조례 제1501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7월 16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수도 급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및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다음 달 검침분부터 적용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563호(43)

[별표 2]

상수도 사용요금 및 구경별 정액요금(제29조제1항 관련)

구분 업종별	사 용 요 금		구경별	구경별 정액요금 (1전당/원)
	단계별 (m ³)	요 금 (원)		
가정용	1-20	670	13m/m	2,090
	21-30	970	20m/m	4,060
	31이상	1,240	25m/m	6,530
일반용	1-100	1,340	32m/m	11,610
	101-300	1,730	40m/m	19,580
	301이상	2,030	50m/m	30,030
대중탕용	1-500	1,230	75m/m	72,830
	501-1,000	1,680	100m/m	124,160
	1,001 이상	1,840	150m/m	270,530
산업용	1~300	900	200m/m	393,130
	301~500	920	250m/m	530,240
	501이상	970	300m/m	639,470

※ 사용요금의 산출은 총 사용량을 단계별로 누진 적용한 산출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563호(44)

[별표 3]

업종구분표(제30조제1항 관련)

업종	구분내용
가정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용 또는 공용급수전에 의한 가사용 급수 ○ 담배·연탄·양곡·문방구·지물·철물 등의 소매업·부동산중개업·인장업·행정서사업·수예점·만화가게·구멍가게 등으로서 10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가게 ○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사회복지수용시설 및 국가유공자단체
일반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 밖의 업종에 속하지 않는 모든 급수
대중탕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 대중 목욕장업
산업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별공장등록업체(제조업)를 제외한 「산업입지법」에 따라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로 지정·개발된 산업단지

사 천 시 공 보

제563호(45)

사천시 조례 제1502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건설공사부실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7월 16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건설공사부실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건설공사부실방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장 총칙

제2조제2호 중 “법 제39조 같은 법”을 “법 제39조 및 같은 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제1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건설공사”로 한다.

제2조제5호부터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별점”이란 법 시행령 제87조제5항 관련 별표 8 제5호의 별점의 측정기준에 따라 부과한 점수를 말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563호(46)

6. “별점 부과대상자”란 건설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 건설기술용역업자 (「건축사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자를 포함한다)와 이에 소속된 건설기술자 또는 건축사(이하 “건설기술자 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7. “부실시공등급”이란 부실시공 정도에 따라 구분하는 등급으로서 별 표 1의 1등급부터 3등급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4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장 건설공사 부실방지 시책

제4조제1호 중 “측정”을 “측정 등”으로 하고 제4조의2 및 같은 조의 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건설공사 현장점검) 시장은 건설공사에 대한 현장점검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효율적인 점검을 위하여 필요하면 소속공무원 외에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를 점검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의3(부실시공 근절 서약서 제출) 발주부서는 각종 공사와 용역 등의 착공(수)신고서를 제출받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부실시공 방지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부실시공 근절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제6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장 부실시공의 신고·접수·처리

제6조 중 “사천시(관련부서 지정) 부실시공 신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를 “건설기술심의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사천시 부실시공

사 천 시 공 보

제563호(47)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 라 한다)를 설치하며, 부서의 장을 신고센터장으로 한다” 로 한다.

제6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제8조제1항 및 제15조제2항 중 “센터” 를 각각 “신고센터” 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별지 서식” 을 “별지 제2호서식” 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준공일(6개월)” 을 “준공일로부터 6개월” 로 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건설공사의 부실측정 및 사전통지) ① 발주부서는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제7조에 따른 부실시공 신고서가 접수된 경우 즉시 법 제53조에 따른 부실의 정도를 측정하여야 한다.

② 발주부서는 점검결과 법령위반 사항 등 부실이 발견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별점 부과대상자에게 받아야 하며, 이 경우 확인서에는 별점 부과대상자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 다만, 별점 부과대상자가 서명을 거부하는 경우 서명 거부임을 명시하고 발주부서가 서명할 수 있다.

③ 발주부서는 별점부과 대상자의 확인을 받아 별점의 측정결과를 별점 부과대상자에게 사전통지 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별점 부과대상자는 별점의 측정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통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신고센터의 장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④ 발주부서는 제1항에 따른 부실 측정을 위하여 현장보존이 필요한 경

사 천 시 공 보

제563호(48)

우 신고센터와 협의하여 부실의 내용이 밝혀질 때까지 해당 건설공사의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⑤ 발주부서는 제1항에 따른 부실측정을 한 경우 신고센터에 주요 부실 내용 등을 시정조치계획, 시공기록(사진, 설계서 등) 등과 함께 알려야 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제11조 및 제12조를 각각 제12조 및 제11조로 하고 제11조 중 “「사천시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조례」에 따른 사천시 정책자문단 기술분과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를 “신고센터의 장에게”라 한다.

제13조를 제13조2로 하고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건설공사 부실방지위원회의 설치·구성) ① 시장은 건설공사 부실 방지와 신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천시 건설공사 부실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위원은 건설공사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법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신고센터의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563호(49)

제13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 건설공사 부실방지위원회

제13조2제2호 및 제3호 중 “(별표 추가)” 를 각각 “(별표 1)” 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부실공사” 를 “부실시공” 으로 하여 같은 조 같은 호를 제 5호로 한다.

제13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별점 책정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검토 및 결정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한 경우
2.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15조제1항 중 “시공사, 건설기술용역업자,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및 해당업체 등” 을 “별점 부과대상자” 로 하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를 “신고센터의 장 및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로 한다.

제16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 부실시공 신고 포상금

제18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563호(50)

제6장 보칙

별지서식을 삭제하고 별표 1 및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발주된 건설공사는 종전의 예에 따른다.

사 천 시 공 보

제563호(51) [별표 1]

부실시공의 등급별 포상금 지급한도액(제13조의2 관련)

부실시공 등 급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7조제5항 별표 8 제5호의 별점의 측정기준에 따라 부과한 부실별점	포 상 금 지급한도액
1 등급	별점 3점	10만원 초과 ~ 20만원 이하
2 등급	별점 2점	5만원 초과 ~ 10만원 이하
3 등급	별점 1점	5만원 이하
해당없음	부실등급 외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 하자보수로 시정이 가능하여 부실시공으로 볼 수 없는 경우	없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사 천 시 공 보

제563호(53)

[별지 제2호서식]

부 실 시 공 신 고 서 (제7조제2항 관련)

신 고 자	성 명		생년월일	(남/여)
	전화번호		주 소	
신고공사	사 업 명		현장위치	
	공 종		발생일자	년 월 일
부실시공 내 용				
증빙서류				
비 고				
<p>「사천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 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p>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사 천 시 공 보

제563호(54)

[별지 제3호서식]

확 인 서(제8조의2제2항 관련)

공사 개 요	공사(용역)명	
	위 치	
	공사(용역)금액	백만원(도금액 : 백만원, 관급자재비 : 백만원)
	공사(용역)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수 급 인	(대 표: (남/여) , 현장대리인: (남/여))
	건설사업관리 (관리관)자	(대 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책임감리원]: (남/여))
확 인 내 용	<p>제목 :</p> <p>내용 :</p> <p style="text-align: center;"><u>상기내용에 대해, 제8조의2제3항에 따라 이의제기가 가능합니다.</u></p> <p style="text-align: center;">위 사항에 대한 사실을 확인합니다.</p> <p>증거자료 : 000도로확포장공사 공사시방서 등 관련자료 1식.</p> <p style="text-align: center;">20 년 월 일</p> <p>확 인 자</p> <p>(계 약 명) (업 체 명) 현장대리인 (성명) (인)</p> <p>(계 약 명) (업 체 명)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성명) (인)</p>	
서명거부 사유	예) 소명기회 요청내용 기술	거부내용 확인자 : (담당부서명) (성명)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사 천 시 공 보

제563호(55)

[별지 제4호서식]

이 의 신 청 서(제8조의2제3항 관련)

공 사 명 :

점 검 일 자 :

지적내용 요약

이의신청 내용

붙임 : 관련 증빙서류

20 년 월 일

확인자 : 현장대리인 (인)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사 천 시 공 보

제563호(56)

사천시 조례 제1503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7월 16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도시림등”이란 도시림, 생활림 및 가로수를 말한다.

제13조의 제목 “(원인자 부담금)”을 “(비용)”으로 한다.

제13조제4항 및 제14조 제1항 중 “원인자부담금”을 각각 “비용”으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원인자부담금의 징수)”를 “(비용의 징수)”로 한다.

제14조제2항 및 제3항을 삭제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563호(57)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563호(58)

[별표 3]

비용의 산정기준(제13조 관련)

<p>피해 발생의 경우</p>	<p>1. 별채, 수간절단, 약품 등에 의하여 도시림등 및 도시림등의 시설물 훼손율이 50%이상 되어 도시림등으로서 가치가 없는 경우 ⇒ 비 용 : 원상복구를 위한 도급공사비</p> <p>2. 과도한 가지훼손 및 상당한 보호시설을 요하는 피해의 경우 (훼손율 20%이상 50%미만) ⇒ 비 용 : 수목비의 20%이상 50%미만 + 보호시설재료비 + 작업비</p> <p>3. 경미한 가지훼손 및 보호시설을 요하는 피해의 경우 (훼손율 10%이상 20%미만) ⇒ 비 용 : 수목비의 10%이상 20%미만 + 작업비</p>
<p>원인 발생의 경우</p>	<p>1. 이식을 하는 경우 가. 원인자가 시행하는 경우 ⇒ 비용 예치 : 하자시 대체 식재를 위한 도급공사비 나. 관리청이 시행하는 경우 ⇒ 비용 예치 : 하자시 대체 식재를 위한 도급공사비 + 이식비</p> <p>2. 제거를 하는 경우 가. 원인자가 시행하는 경우 ⇒ 비용 : 대체 식재를 위한 도급공사비 나. 관리청이 시행하는 경우 ⇒ 비용 : 대체 식재를 위한 도급공사비 + 제거비</p>
<p>○ 산출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급공사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한 원가계산 적용[재료비(수목비 등을 포함한다) + 노무비 + 제경비]하여 설계된 공사비 - 수목비 : 가격정보(조달청)지 가격, 가격이 없는 경우 시중 시가를 적용하여 산정 ○ 작업비 및 이식비, 제거비 : 상용인부 활용 시 정부 노임단가에 준함 <p>○ 예치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납부방법 : 세입세출외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예치 - 예치기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하자책임 담보기간동안 예치 - 환불 등 : 예치기간이 경과한 후 지체 없이 하자검사를 실시한 후 이상 여부를 판단하여 환불 또는 세외수입 조치 	

사 천 시 공 보

제563호(59)

사천시 조례 제1504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7월 16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소관업무 부서장”을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소관업무 담당주사를”을 “업무담당 팀장을”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은 「지방회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의 제목 “(특별회계의 설치)”를 “(특별회계의 설치 및 존속기한)”으로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563호(60)

제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제3항 중 “우주항공국장이 된다” 를 “업무담당 국장이 되며” 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2항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563호(61)

사천시 조례 제1505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7월 16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1호 중 “감염병 환자 또는 정신질환자”를 “감염병 환자”로 한다.

제1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시설에 대하여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사 천 시 공 보

제563호(62)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563호(63)

사천시 조례 제1506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첨단항공우주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7월 16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첨단항공우주과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첨단항공우주과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

제10조제1항제10호를 제11호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
이 신설한다.

10.「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제12조제1호 중 “정신질환자, 음주상태”를 “음주상태”로 한다.

제12조제4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사 천 시 공 보

제563호(64)

입장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4조의 제목 “(변상조치)”를 “(손해배상 등)”으로 한다.

제1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관람자 및 시설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관람자 및 시설 이용자가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21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대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대관자가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563호(66)

[별지 제2호 서식]

대관(변경)허가서

성명·단체명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단체의 소재지 또는 대표자 주소	전화 번호	집
		직장
		휴대전화
전시(행사)명		
전시(행사) 내용		
대관기간	작품반입 및 설차기간	
	전시기간	
	작품반출기간	
출품 및 전시작품		
감면사유		
관람료 (우측에 금액기록)	무료()	
	유료()	

「사천첨단항공우주과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관을 허가하오니 같은 조례 제21조를 참고하여 대관자 준수사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사 천 시 장

210mm×297mm(중성지 75g/m²)

사 천 시 공 보

제563호(67)

[별지 제3호서식]

대관료반환신청서

성명·단체명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남/여)
단체의 소재지 또는 대표자 주소	전화 번호	집	
		직장	
		휴대전화	
전시(행사)명			
전시(행사) 내용			
당초 대관허가기간	설치일		
	행사일		
	철거일		
반환신청사유			
반환대관료			

「사천첨단항공우주과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제20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관료반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남/여)

(인)

사천시장 귀하

사 천 시 공 보

제563호(68)

사천시 조례 제1507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보건소 등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7월 16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보건소 등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보건소 등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563호(69)

【별표 1】

제증명발급수수료(제10조 관련)

(단위 : 원)

구 분	기 준	수수료	비고
1. 건강진단서	1통	500	
2. 채용신체검사서	1통	500	
3. 일반진단서	1통	500	
4. 특별진단서	1통	2,000	
5. 사체검안서	1통	5,000	
6. 위생분야종사자 건강진단서	1통	3,000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서 규정한 수수료
7. 사망진단서	1통	500	
8. 기 발급 증명서 추가발급	1통	500	
9. 1통 초과발급	1통	500	

사 천 시 공 보

제563호(70)

규 칙

사천시 규칙 제670호

사천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학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7월 16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학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사천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학기금 운용·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중고등학생은 교과목별 성취도가 “양(60점)” 이상인 학생” 을 “중학생은 교과목별 성취도가 “양(60점)” 이상인 학생, 고등학생은 내신평균등급이 6등급 이상인 학생” 으로 하고 “해당학년 학기개시 1개월 후부터 추천한다.” 를 “추천한다.” 로 한다.

제6조제2항제1호 중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 를 “학생의 학교생활

사 천 시 공 보

제563호(71)

기록부 또는 성적증명서” 로 한다.

제8조 중 “상·하반기 각 1회씩 총 2회를 해당 학년 종료 시까지 지급하
되, 사정에 따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를 “연 1회 지급한다.” 로 한
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563호(72)

[별지 제1호서식]

장학금 신청서

○ 인적사항

보 호 자		장 학 생(특별 · 일반 장학생)			
주 소		학 교 명			
성 명		학 년	제 학년	학과	
생년월일	(남 / 여)	성 명	(한자)		
가족 수	명	생년월일	(남/여)	보호자와 의 관계	

○ 가족사항

성 명	성 별	세대주와의 관계	생년월일	직 업	비고

○ 확인사항

장학금 지급대상	1. 소년소녀가장 () 2. 학교내외 학업 및 실기관련 대회입상자 () 3. 일반 학업성적 우수자 ()	장학금 기 수혜여부	
-------------	--	---------------	--

사천시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학기금(장학금)을 지급받고자 다음 서류를 갖추어 신청합니다.

- 첨부 : 1. 학교장 추천서 1부.
2. 생활기록부 사본(또는 성적증명서) 1부.
3. 기타 입증서류(특별장학생인 경우 한함) 1부.

년 월 일

신청인 보호자 (인)

추천인 사천시 읍·면·동장 (인)

사천시장 귀하

사 천 시 공 보

제563호(73)

[별지 제2호서식]

장학보조금 신청서

○ 인적사항

보 호 자		학 생			
주 소		학 교 명			
성 명		학 년	제 학년	학과	
생년월일	(남/여)	성 명	(한자)		
가 족 수	명	생년월일	(남/여)	보호자와 의 관계	

○ 장학보조금 내역

구 분	고지(견적)금액	지원신청액	비 고
수학 여행비			
교복 구입비			
기타 학비()			

사천시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학기금(장학보조금)을 지급받고자 다음 서류를 갖추어 신청합니다.

- 첨부 : 1. 재학증명서(또는 학생증사본) 1통.
2. 고지(견적)서 1부.

년 월 일

신청인

인

사천시장 귀하

사 천 시 공 보

제563호(74)

사천시 규칙 제671호

사천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생활안정자금 용자 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7월 16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생활안정자금 용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사천시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생활안정자금 용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사천시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생활안정자금 용자 조례 시행규칙”을 “사천시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사천시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생활안정자금 용자 조례」를
“「사천시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

사 천 시 공 보

제563호(75)

용 조례」” 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을 “제5조제2항에 따라” 로 하고 “각호의” 를 “각 호의” 로 하며, “의한다” 를 “따른다” 로 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재정보증은 신용보증회사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서를 발급받지 못 할 경우에는 20,000원 이상의 재산세 납부실적이 있는 사람 1명 이상의 재정보증서를 첨부할 수 있다.

제3조제2항 중 “제1호서식과” 를 “제1호와” 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서식을” 을 “서식은” 으로 하며 “제2호서식과” 를 “제2호와” 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를 “제7조에 따라” 로 하고 “기금” 을 “자금” 으로 하며 “자가” 를 “사람이”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자가” 를 “사람이” 로 하고, “기타” 를 “그 밖에” 로 한다.

제4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융자금의 관리) 시장은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융자금 대여 및 상환자료를 전산관리 하여야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감면신청 등) 융자금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5호 서식을 작성하여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읍·면·동장은 감면신청자에 대한 상황을 조사한 후 의견서를 첨부

사 천 시 공 보

제563호(76)

부하여 조례 제13조에 따라 심사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을 각각 삭제하고 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563호(77)

[별지 제5호서식]

용자금상환 감면 신청서

1. 용자금 대부현황

채무자 인적사항	성 명	(남□,여□)	생년월일	
	주 소			
용자내역	대부일시			
	용자금액			
	용자조건			
	사 업 명			

2. 감면신청현황

신청(금액/조건)	
신 청 사 유	

사천시 기초생활수급권자 생활안정저금 용자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 .

위 신청자 성명 : (인) (남/여)

주소 :

용자자와의 관계 :

연락처 :

첨부 : 증빙서류

경유 : 읍면동장 (직인)

사천시장 귀하

사 천 시 공 보

제563호(78)

사천시 규칙 제672호

사천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7월 16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기준) 시장은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대여·지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여·지원대상·기준·금액·조건 등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의 사천시 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거쳐 정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563호(79)

제3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기금을 대여·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기금지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별지 제3호서식)
2.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3.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1년간 활동실적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검토한 후에 위원회 심의를 거치거나 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지원여부와 지원 금액을 결정한다.

1. 기금의 설치목적에 대한 부합여부
2. 대여·지원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3. 대여·지원금액 산정의 적정여부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여부
5. 최근 1년간 자활사업의 활동실적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결정된 내용을 신청 접수 후 1개월 이내에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4조(재정보증) ① 사업자금을 대여 받고자 하는 자활기업 및 개인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하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시키기 어려울 경우 전세점포임대자금 대여에 한하여 임대기간이 만료되거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해지된 때에는

사 천 시 공 보

제563호(80)

임대인이 임대보증금을 받드시 시장에게 반환한다는 특약사항을 정하여 점포임대 계약서를 체결하고, 전세권을 설정할 경우 그 서류로 재정보증서를 갈음할 수 있다.

1. 3만원 이상의 재산세 납부실적이 있는 관내 거주자 1인의 재정보증서(개인 사업자에 한함)

2. 보증보험증권(사용금액의 100분의 120상당 금액)

3. 기타 대여금액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담보

② 재정보증서의 서식은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③ 자활기업이 사업자금을 대여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과 별지 제9호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신청 및 교부) ① 기금 대여·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신청인은 사업개시 1개월 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기금교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기금대여·지원대상자에게 기금을 해당 사업추진 개시 전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분할하여 교부할 수 있다.

제6조(기금지급) 시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기금을 대여하기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자활기금 대여결정통지서와 기금을 대여하고 지원하기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6호서식의 자활기금 지원결정 통지서와 기금을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기금상환 통보) 시장은 조례 제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상환 기

사 천 시 공 보

제563호(81)

일 전에 기금을 회수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기금을 대여 받은 자에게 지체 없이 상환하도록 별지 제10호서식의 자활기금 상환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하며,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상환기한 연장) ① 시장은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 내에 상환이 곤란할 경우에는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상환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상환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11호서식의 자활기금 상환기한 연장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감면조치) ① 시장은 지원금을 대여 받은 자가 제8조에 따라 상환기간을 연장하였으나, 천재지변, 사업실패, 고령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근로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 채권과 그 이자 및 연체이자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상환금을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의 서식에 따른 자활지원금 상환금 감면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자활지원금 상환금 감면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상환금을 감면받고자 하는 자의 사정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그 의견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대여금의 대하) 시장은 조례 제8조제5항에 따른 수탁기관에 대여금을 대하하는 때에는 대하금리를 조례 제8조제2항제1호의 대여이

사 천 시 공 보

제563호(82)

율보다 1퍼센트 내에서 낮게 정한다.

제11조(사업계획·예산 변경) 조례 제7조에 따라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지원받은 기금으로 추진하는 사업내용을 변경하거나 지원받은 예산을 변경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3호서식의 사업계획변경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기금정산) ① 기금을 지원받은 자는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4호서식의 자활기금 정산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원금 중 집행 잔액은 제1항에 따른 자활기금 정산보고서를 제출한 후 7일 이내에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13조(정기회 등) ① 조례 제12조에 따른 위원회의 정기회는 매년 상·하반기로 나누어 개최한다.

② 상반기 정기회는 전년도 기금결산에 대하여 심의하고, 하반기 정기회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을 심의한다.

제14조(회의록 작성) 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에 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직·성명
3. 회의안건과 심의·결정내용

제15조(장부의 비치) 조례 제13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563호(83)

1. 자활기금 관리대장(별지 제15호 서식)
2. 자활기금 교부대장(별지 제16호 서식)
3. 자활기금 상환카드(별지 제17호 서식)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563호(84)

[별지 제1호서식]

자활기금 지원(대여)신청서(개인)

1. 성 명 :
2. 생 년 월 일 :
3. 주 소 :
4. 연 락 처 :
5. 사 업 목 적 :
6. 사 업 개 요 :
7. 소요경비재원 :

총 사업비	지원액	자체 부담액	후원금	비고
사업기간				
사업계획	“ 별 첨 ”			

8.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 소요경비 내역 견적서 또는 산출명세서, 사업수지 계산 명세서
- 재정보증 : 재정보증서(3만원 이상의 재산세 납부실적이 있는 관내 거주자 1인) 또는 기타 대여금액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담보
- 기타 관계 서류

「사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활기금 대여.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남□, 여□)(인 또는 서명)

사천시장 귀하

사 천 시 공 보

제563호(86)

[별지 제3호서식]

사 업 계 획 서

1. 사업개요

사업명			
사업내용 <input type="checkbox"/> 신규사업 <input type="checkbox"/> 기존사업투자 <input type="checkbox"/> 업종변경	사업장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평)	
	위 치		
	임대내용	<input type="checkbox"/> 전세 (원) <input type="checkbox"/> 월세 (원) <input type="checkbox"/> 기타 (원) <input type="checkbox"/> 보증금 (원)	
	사업장이 없는 경우	<input type="checkbox"/> 노점 <input type="checkbox"/> 트럭행상 <input type="checkbox"/> 기타()	
기술보유 현 재 종사 직종	<input type="checkbox"/> 자영업 ()	가장 오랜 기간 종사한 직종	<input type="checkbox"/> 자영업()
	<input type="checkbox"/> 근로자 ()		<input type="checkbox"/> 근로자()
	<input type="checkbox"/> 기타 ()		<input type="checkbox"/> 기타 ()
	경력(년)		경력(년)
자격증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종류	

2. 사업계획

사업비 총괄 내역

총사업비	소요재원 확보 계획		
	용자신청액	자부담	기타

※ 첨부 : 소요 경비 내역 견적서 또는 산출 명세서

사 천 시 공 보

제563호(87)

□ 산출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세 항 부 목	산 출 기 초	금 액	자 금 별		
				계	보조금	자부담
계						
	소 계	산출내역 상세 기재				
	소 계					

※ 내역을 자세히 분리기재

□ 사업수지계산

총 수 익	총 비 용	순 이 익	비 고

※ 첨부 : 사업수지 계산 명세서

사 천 시 공 보

제563호(89)

[별지 제4호서식]

자활기금 교부신청서(개인 또는 단체)

1. 성명(단체·법인명) : (남□, 여□)
2. 생년월일(법인번호) :
3. 주 소 :
4. 연 락 처 :
5. 사 업 명 :
6. 사 업 목 적 :
7. 사 업 개 요 :
8. 소요경비재원 :

총 사업비	신청액	자체 부담액	후원금	비고
사업기간				
사업계획	“ 별 첨 ”			
신청계좌	계좌번호 :	예금주 :	은행명 :	

「사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활기금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남□, 여□) (인 또는 서명)

사천시장 귀하

사 천 시 공 보

제563호(90)

[별지 제5호서식]

자활기금 대여결정 통지서

1. 대여대상자

- 성 명 (법인·단체명) :
- 생년월일(법인번호) :
- 주 소 : (전화 :)

2. 대여금액: 금 원(W)

3. 대여용도 :

4. 대여조건

- 상환기간 : 년 거치 년 균등분할상환
- 이 율 : 연 %
- 연체이자 : 연 %

「사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법인·단체)를 년도 자활기금 대여대상자로 결정하였기에 통지합니다.

20 . . .

사 천 시 장 (인)

사 천 시 공 보

제563호(91)

[별지 제6호서식]

자활기금 지원결정 통지서

1. 지원대상자

- 성 명 (법인·단체명) :
- 생년월일(법인번호) :
- 주 소 : (전화 :)

2. 지원금액 : 금 원(W)

3. 지원용도 :

4. 지원조건

- 사업목적 :
- 사업기간 :
- 사업내용 :
- 특기사항 : 위의 지원결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사항을 위반할 경우 지원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
 - 가. 지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나. 법령의 규정, 지원금의 교부조건에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 다.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 라. 해당 자활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조건이 사후적으로 미충족된 경우

「사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법인·단체)를 년도 자활기금지원대상자로 결정하였기에 통지합니다.

20 . . .

사 천 시 장 (인)

사 천 시 공 보

제563호(92)

[별지 제7호서식]

자활기금 대어 재정보증서

- 채무자 주 소 :
성 명 : (남□, 여□) (인)
생 년 월 일 :

- 용자액 일 금 : 원정 (₩)

위 사람이 사천시 자활기금을 용자 받아 「사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등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한 상환기간이 지나도 용자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이 연대보증채무를 변상할 것을 보증합니다.

년 월 일

보증인 주 소 :
성 명 : (남□, 여□) (인)
생 년 월 일 :

사천시장 귀하

※ 구비서류 : 1. 보증인 인감증명서 1부
2. 보증인 과세증명서 1부

사 천 시 공 보

제563호(93)

[별지 제8호서식]

자활기금 대여 서약서

○○지역자활센터장은 ○○자활기업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상기 자활기업 사업에 대하여 창의력을 발휘하여 자활기업이 자활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사업자금이 목적 외로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음.
2. 대여되는 자활기금은 대여자금 약정서에 따라 기간 내에 차질 없이 상환될 수 있도록 지도·관리하겠음.
3. 상기 자활기업에 대한 지역자활센터로 공동체가 성실하고 건전하게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관리자로서 책임을 다 하겠음.

첨 부 : 자활기업에 대한 경영·지도계획서1부.

년 월 일

○○○ 지역자활센터장 (인)

사천시장 귀하

사 천 시 공 보

제563호(94)

[별지 제9호서식]

자활기금 대여 약정서

○○년도 사천시 자활기금 세출예산에 계상된 지원금을 시장은 ○○자활기업(이하“자활기업”라 한다)에 대여하고, 자활기업은 동 자금을 운용 또는 사천시에 상환함에 있어 필요한 제반사항에 관하여 시장과 자활기업간에 다음과 같이 대여 약정을 체결한다.

제1조(대여자금) ① 시장이 자활기업에 대여하는 금액의 한도는 아래와 같이 한다

자활기업명	사 업 명	대여금액(백만원)	대 여 기 간

② 대여금액은 실제 지원된 금액으로 하며, 대여금 교부일에 대여된 것으로 한다.

제2조(지원절차) 자활기업이 기금을 대여 받고자 할 때에는 대여금 교부신청서 등 지원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대여조건) 대여금의 이율은 연리 ()에 해당하는 이자를 균등분할 상환 하여야 한다.

제4조(대여금의 원리금 상환) ① 자활기업은 대여금 교부 시 통보하는 대여원리금 상환계획에 따라 상환하여야 한다.

② 대여금의 이자는 매월 ○일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기업이 원금의 이자를 연체한 때는 원금에 ()의 연체이자를 연체일수에 따라 산정된 연체이자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 대여금은 기간만료 또는 대여중지 사유 발생 시 일시 상환한다.

제5조(기간의 계산) ① 사천시 자활기금 대여금의 이자 산출에 관한 기간의 계산에 있어서는 대여된 날은 산입하며, 납부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경우 1년을 365일로 계산한다.

제6조(보고의무 등) 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자활기업 관계 자료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563호(95)

② 시장은 이 약정의 이행, 관계 자료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활기업에 대하여 사실조사를 할 수 있으며 자활기업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약정의 수정) ① 이 약정은 시장과 자활기업간의 합의로 수정할 수 있다. 다만,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사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및 같은 법(이하 “관계법규”라 한다)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시장이 수정하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제8조(약정 불이행시의 조치) 자활기업이 관계법규 및 이 약정상의 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 할 때에는 시장은 지원기간 만료 전이라도 당해 대여금을 즉시 회수하거나 그 대여금에 대하여 유용된 용도에 다른 금리를 적용 할 수 있다.

제9조(효력발생과 종료) 이 계약의 효력은 대여 일로부터 발생하여 공동체가 시장에 대한 모든 의무가 완전히 이행되었음을 시장이 확인함으로써 종료한다.

이 약정서의 성립을 입증하기 위하여 약정서 2통을 작성하여 각각 직인을 날인한 후 각 1통씩을 보관한다.

년 월 일

사천시 자활기금운용관 (직인)
주민생활지원과장 ○○○ (실인 및 서명)
공동체구성원(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실인 및 서명
(남□, 여□)			

입회 및 확인자 : ○ ○ ○ 지역자활센터장 ○ ○ ○ (실인 및 서명)

- 붙임 : 1. 신청인 인감증명서 각 1부
2. 재정보증서 1부

사 천 시 공 보

제563호(96)

[별지 제10호서식]

자활기금 상환 통지서

1. 대상자

- 성 명 (법인·단체명) :
- 생년월일(법인번호) :
- 주 소 : (전화:)

2. 상환금액: 금 원(₩ 원)

원금	이자	비 고

3. 회수사유 :

4. 상환기한 : 통지일로부터 60일 이내(통지일: 20 . .)

5. 상환방법 : 가상계좌입금, 납입고지서

6. 특기사항

1. 상환기한 내에 상환자금을 상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2. 상환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일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상환기한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야합니다.

「사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활기금상환을 통지합니다.

20 . . .
사 천 시 장 (인)

사 천 시 공 보

제563호(97)

[별지 제11호서식]

자활기금 상환기한 연장 신청서

1. 신청자

- 성 명 (법인·단체명) : (남□, 여□)
- 생년월일(법인번호) :
- 주 소 : (전화:)

2. 상환통지금액 : 금 원(₩ 원)

원금	이자	비 고

3. 연장사유 :

4. 상환연장기한 : 20 . . . 까지

5. 붙임: 연장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활기금 상환기한 연장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사천시장 귀하

사 천 시 공 보

제563호(98)

[별지 제12호서식]

자활기금 대여금 감면 신청서

1. 신청자

- 성 명 (법인·단체명) : (남□, 여□)
- 생년월일(법인번호) :
- 주 소 : (전화 :)

2. 감면요청금액 : 금 원(₩ 원)

원금	이자	비 고

3. 감면요청사유 :

4. 붙임 :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활기금 대여금 감면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사천시장 귀하

사 천 시 공 보

제563호(99)

[별지 제13호서식]

사업계획변경 승인신청서

1. 신청자

- 성 명 (법인·단체명) : (남□, 여□)
- 생년월일(법인번호) :
- 주 소 : (전화:)

2. 지원받은 내용

- 사업목적 :
- 사업기간 :
- 사업내용:
- 지원금액 : 금 원(W 원)

3. 변경사유

4.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

구 분	당초계획	변경계획	비 고
예산변경			
사업내용변경			

「사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활기금 사업계획변경 승인을 신청합니다.

20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사천시장 귀하

사 천 시 공 보

제563호(100)

[별지 제14호서식]

자활기금 정산보고서

1. 사 업 명 :
2. 총 사 업 비 :
3. 사 업 기 간 :
4. 사업비 집행사항

구 분	사업비 집행내역				비 고
	총사업비	기금지원액	자부담	후원금 등	
계					
집행액					
잔 액					

5. 참고자료

- 1) 기금지원사업 추진실적 1부
- 2) 지원금집행 세부내역 1부
- 3) 영수증사본 및 세금계산서 각 1부
- 4) 기타증빙자료 각 1부

「사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천시 자활기금을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결과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남□, 여□) 인

사천시장 귀하

사 천 시 공 보

제563호(103)

[별지 제17호서식]

자활기금 상환카드

일련번호					
대여(상환)자				보 증 인	
성 명	(남□, 여□)	전화번호			성 명 (남□, 여□)
주 소				주 소	
생년월일				생년월일	
대 여 액		용 도		성 명	
대 여 일 시				주 소	
상환개시(만기)일	20 ~			생년월일	
상 환 방 법	년 거치		년 균등분할상환		
비 고					

자활기금 대여금 상환 상황

구분	회수 정 수	상 환						원 금 잔 액	취급자 (인)
		조정일	수납일	계	원 금	이 자	연체금		
1									
2									
3									
4									
5									
6									
7									
8									
9									
10									
11									
12									
-									
-									
119									
120									

사 천 시 공 보

제563호(104)

관 련 법 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3(자활기금의 적립) ① 보장기관은 이 법에 따른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일정한 금액과 연한을 정하여 자활기금을 적립할 수 있다.

② 보장기관은 자활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활기금의 관리·운영을 제15조의2에 따른 중앙자활센터 또는 자활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에 드는 비용은 보장기관이 부담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자활기금의 적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6조의2(자활기금의 설치) ①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또는 시·군·구에 설치할 수 있다.

② 기금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사회복지 관련 기금과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금은 다른 사회복지 관련 기금과 계정을 분리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563호(105)

훈 령

사천시 훈령 제359호

사천시 부서별 분장사무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18년 7월 16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부서별 분장사무규정 일부개정규정

사천시 부서별 분장사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별표 1 본청 과의 세부 분장사무 중 공보감사담당관 감사팀 분장사무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563호(106)

[별표 1]

본청 과의 세부 분장사무(제3조 관련)

[담당관 소관]

부 서 명	사무분야	분 장 사 무
공보감사 담 당 관	감사팀	1. 감사기본계획수립(종합감사)
		2. 시분청,직속기관,사업소,출장소,읍면동에 대한종합·특정감사
		3. 공무원 징계요구 및 소청에 관한 사항
		4. 시비 출자·출연기관 및 보조단체에 대한 감사
		5. 시가 설립한 공단 및 출자·출연한 법인에 대한 감사
		6. 상급기관 감사 수감 및 처분 요구사항 처리
		7. 적극행정면책 및 공무원경고 등 처분에 관한 사항
		8. 공공감사시스템 운영 및 관리
		9. 감사원 자체감사활동 실적심사관련 업무
		10. 기술감사 계획 수립 및 실시에 관한 사항
		11. 일상감사업무(공사, 용역, 물품)
		12. 특명사항의 조사
		13. 공무원 비위 조사
		14. 상급기관 이첩 및 다수인 관련 민원 사항 검열
		15. 공무원 복무기강 확립에 관한 사항
		16. 사정업무의 계획 수립 및 추진
		17. 기동감찰
		18. 공직자 재산등록 및 공직자 윤리위원회 운영
		19. 청원경찰에 대한 비위조사 및 징계요구
		20. 공직윤리행동강령에 관한 사항
		21.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시책 평가
		22. 민원사무의 처리사항 검열
		23. 망실 훼손 사고 조사

사 천 시 공 보

제563호(107)

부 서 명	사무분야	분 장 사 무
공보감사 담 당 관	감사팀	24. 공직자 병역사항 신고
		25. 일반건설업 및 전문건설업 관련 공사의 사전심사
		26. 일반 및 기술, 학술용역 사전심사
		27. 물품 구매제도 사전심사
		28. 내부통제제도 총괄운영
		29. 납세자보호관제도 운영 관리